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연월일 | 2020. . .<br>(제 회)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 권덕철<br>(보건복지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0. . .             |

법제처 심사 전

### 1. 개정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라 추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일반가정위탁, 전문가가정위탁, 일시가정위탁의 선정 기준 마련(안 제2조제1항 개정, 별표5 신설)
- 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할 민간전문인력의 자격 및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신설)
- 다. 아동의 보호조치 시 수립해야 할 개별보호·관리계획에 아동의 특성, 원가정 지원 계획, 양육상황 점검 계획 추가(안 제11조의2 신설)
-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이 연 4회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도록 규정(안 제11조의4 개정)
- 마.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의 내용 및 방법 규정(안 제14조의4 개정)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령 제            호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민간전문인력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인 자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민간전문인력의 업무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상담·가정환경조사 및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점검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4.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5조(중전의 제4조)제1항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를 “가정위탁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이나”를 “한다) 및 민간전문인력이나”로,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대상아동 조사서”를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로, “가정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대리양육 또는”을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를 “가정위탁보호가”로,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을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가정위탁보호”로,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를 “가정위탁보호자”로 한다.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영 제17조”를 각각 “영 제16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은 친생부모(친생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및 양자가 될 아동(13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부터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때, 입양동의서 제출은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입양의 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보호조치를 결정한 경우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아동을 인도한 기관 등에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입양대상아동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의 아동카드 1부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비치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법 제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3을 삭제하고,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개별보호·관리계획)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

2. 아동의 원가정 지원 계획(다만, 아동의 원가정을 알 수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를 의뢰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에게 개별보호·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그에 따른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를 제11조의5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조사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연4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5(종전의 제11조의4)의 제목 “(가정 복귀 신청)”을 “(퇴소신청 등)”으로 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체험활동 형태의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한다)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의 종류와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상대로 사정(査定)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법 제1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29조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본직”을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3서식 중 “2일”을 “심의 후 2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시행규칙 제11조의3”을 “시행규칙 제11조의5”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사례결정위원회)”로 하고, 같은 서식 중 “검토”를 “심의”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하여 일반위탁가정(대리양육, 친인척위탁 포함), 전문위탁가정 또는 일시위탁가정으로 각 결정된 자는 이 규칙에 따른 각 일반위탁가정, 전문위탁가정 또는 일시위탁가정으로 본다.

[별표 5]

**위탁가정의 기준**(제2조 관련)

| 구분         | 위탁가정의 기준   |
|------------|--|
| 1. 일반 가정위탁 | <p>1. 일반위탁가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일반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p> <p>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p> <p>다. 위탁부모의 연령이 25세 이상(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25세 이상)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다만,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탁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위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라.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 자녀 제외)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p> <p>마. 위탁부모 및 위탁가정에 거주하는 사람 중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p> <p>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p> |
| 2. 전문 가정위탁 | <p>2. 전문위탁가정은 일반가정위탁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고,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p> <p>가. 일반·일시가정위탁부모 경험이 3년 이상인 자</p> <p>나.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li> <li>2)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li> <li>3)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교사</li> <li>4)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사</li> <li>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li> <li>6)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li> </ol>  |

|            |  |
|------------|--|
|            | <p>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p> |
| 3. 일시 가정위탁 | <p>1. 일시위탁가정은 일반가정위탁 기준을 충족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일시위탁부모 선정 결과 통보일이 일시가정위탁 의뢰일로부터 1년 이내 이어야 한다.</p>  |





(뒤쪽)

|             |       |       |           |
|-------------|-------|-------|-----------|
| 보호조치<br>사항  | 날짜    | 년 월 일 | 조치 내용     |
|             | 보호시설명 |       | 주소        |
| 가정환경(성장 과정) |       |       |           |
| 상담자 의견      |       |       |           |
| 지도·판정       |       |       |           |
| 금품 지급사항     |       |       |           |
|             |       | 작성일   | 년 월 일     |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아동 입원(입소) 의뢰서   |           |  |                 |  |
|---|-----------|--|-----------------|--|
| 입원<br>(입소)<br>의뢰<br>아동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 본적        |  |                 |  |
|   | 주소        |  |                 |  |
| 보 호<br>시 설<br>(기관)  | 시설(기관) 명칭 |  | 시설(기관)의 장<br>성명 |  |
|   | 소재지       |  |                 |  |
| 입원(입소) 의뢰 사유  |           |  |                 |  |
| <p>「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 아동을 귀 시설(기관)에 입원(입소)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시·도지사</p> <p style="text-align: right;">시장·군수·구청장      인</p> <p style="text-align: right;">전문치료기관·요양소의 장      귀하</p> |           |  |                 |  |





탁가정의 환경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자녀가 없거나 자녀(18세 이상인 자녀는 제외한다)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
- 5.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신 설>

제4조(민간전문인력 등) ① 법 제 13조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 분야 또는 보건 분야 근무

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민간전문인력의 업무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발생 시 상담·가정환경 조사 및 건강검진·심리검사 지원
-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 및 그에 따라 아동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관리·점검
- 3.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4. 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한 아동에 대한 사후 관리
-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조치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

제5조(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① -----  
-----  
--- 가정위탁보호-----  
-----

호서식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보호대상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이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아동위원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정위탁보호(대리양육) 신청인 가정조사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대상아동 조사서에 따라 신청인의 가정과 보호대상아동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가정위탁보호 -----

② -----  
-----  
-----  
-----  
----- 한다)  
및 민간전문인력이나 -----

----- 가정위탁보호 신청인 가정조사서 -----

----- 가정 -----

----- 법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③ -----

· 구청장은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에 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아동카드 3부를 작성하여 그 1부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다른 1부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에게 발급하여 비치하게 하며, 또 다른 1부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여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이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사후관리 상황과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금품의 지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결정의 통보를 받은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의 소지품을 지체 없이 대리양육자 또는 가정위탁보호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5조 (생략)

----- 가정위탁보호가 -----

④ ----- 가정위탁보호 -----

----- 가정위탁보호자 -----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신설>

아동카드 1부를 작성하여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비치한다.

제10조(보호조치의 통보 등) ① -----  
-----  
---법 제15조제1항제3호-----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개별보호·관리계획)

① 법 제15조제4항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건강검진·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
2. 아동의 원가정 지원 계획(다만, 아동의 원가정을 알 수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
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생략)

<신설>

제11조의3(퇴소신청 등) 영 제21조의2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보호를 의뢰할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입양기관의 장에게 개별보호·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별보호·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자는 그에 따른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의3 (현행 제11조의2와 같음)

제11조의4(양육환경 실태조사)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양육환경 조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및 조사대상 아동의 명단을 토대로 연4회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양육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삭제>

제11조의4(가정 복귀 신청) <신설>

①·② (생략)

<신설>

제11조의5(퇴소신청 등) ① 영 제21조의2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키려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을 보호 중인 사람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14조의4(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제공)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 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교육
2. 양육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3.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상담(체협활동 형태의 교육 및 상담을 포함한다)
4. 감정조절을 위한 상담 및 심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
2. ~ 4. (생략)
- ② ~ ④ (생략)

제29조(공통서식)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입소신청서, 영 제55조제2항에 따른 비용징

리치료

5.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담·

교육 및 심리적 치료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의 특성에 적합한 지원의 종류와 내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를 상대로 사정(査定)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자산형성지원사업의 대상 등) ① -----

-----  
-----  
-----.

1. 법 제15조제1항제3호-----  
-----  
--
2. ~ 4.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공통서식) 제6조제1항---  
-----  
-----

수 통지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  
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  
-----  
-----.